

헤이웨이 (Hey'Way)

정보공개서

(주)디에이치모빌리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디에이치모빌리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현대실리콘엘리 A동 1301호(영천동)

대표전화: 070-4439-8016

팩스번호: 0303-3444-892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서류

- [별첨1] 가맹본부 재무증명
- [별첨2] 구입강제품목
- [별첨3] 비정상적인 운행에 따른 운영 정책
- [별첨4] 서비스품질 등급 관리
- [별첨5] 영업표지 운영 안내

*기타 서식

- [별지. 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지. 서식]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별지. 서식] 정보공개서등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디에이치모빌 리티	헤이웨이 (Hey'Way)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1301호(영천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1.07.	2020.02.01.	한영철	070-4439-8016	0303-3444-8922
	법인등록번호	210111-0149700	사업자등록번호	298-81-016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한영철	헤이웨이 (Hey'Way)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1301호(영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영철	070-4439-8016	0303-3444-892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한창훈	헤이웨이 (Hey'Way)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1301호(영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영철	070-4439-8016	0303-3444-892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김강희	헤이웨이 (Hey'Way)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1301호(영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영철	070-4439-8016	0303-3444-892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헤이웨이 (Hey'Way)	-
상 호	헤이웨이 (Hey'Way) OO점	
상표(서비스표)	Hey'Way 헤이웨이	출원번호 제4020240106891 출원번호 제4020240106892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별첨 5]영업표지 운영 안내. 참조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17,735	614,571	203,163	1,693,436	132,938	124,951
2022년	1,153,259	368,640	784,618	2,747,815	818,052	751,455
2023년	2,363,332	379,614	1,983,717	3,358,245	1,375,051	1,237,099

※ 별첨 1.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한영철	대표이사	2020.01~현재	(주)디에이치모빌리 티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한창훈	사내이사	2020.01~현재	(주)디에이치모빌리 티 사내이사(실장)	회사 전반 관리
	김강희	감사	2020.01~현재	(주)디에이치모빌리 티 감사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헤이웨이 (Hey'Way)	영업표지, 상표사용 35류	2024.6.12. 출원	출원 제4020240106 891	(주)디에이치모빌 리티	출원 중

헤이웨이 (Hey'Way)	영업표지, 상표사용 39류	2024.6.12. 출원	출원 제 4020240106 8912	(주)데이치모빌 리티	출원 중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중인 상표는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예정(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디에이 치모빌리티	헤이웨이(Hey'Way)	한영철	예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현대실리콘앨리 A동 1301호(영천 동)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헤이웨이(Hey'Way)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운송	프리미엄 택시서비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 체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없습니다.(가맹점없음)(당사는 가맹점별 그 안의 종업원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차량 댓수 및 근무시간이나 영업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매출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사업자 당 연간 평균매출액’ 부분에 매출 파악 불가로 기재 합니다.)

※ 매출액은 시장상황, 기사에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신문, 인터넷	*2023.1.1~12.31	0	0	0	
판촉	-	-	-	-	-	
합계	-	-	0	0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	-	-	-

※ 해당 사항 없음(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 이용).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설비 등 기타 비용	자율선택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	-	-	-	-
교육비	77	교육실시 전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후	1인당
총계	77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400 (면허 1대당)	계약체결 후 예치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 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 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 상액등과 정산 후 반환

*가맹점 개설 시 예치 가맹금은 차량 보유 면허 대당 400,000원으로 산정 되며,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000천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시 구체적인 금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0	-

교육비	77	부가세 포함
보증금	400	- 면허 차량 1대 당 -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제 - 금10,000천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될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 가능
합계	477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차량 내관 외관 필수설비	가맹본부	250~440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갓등, 데칼, 스티커, 연동기기 *공임비 포함
기사복장 (유니폼)	가맹본부	50~100	영업시작 전	미지급 시	계절별 기사복장 (티셔츠, 가디건)
총계	-	300~540	-	-	택시 1대 기준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가맹택시에서 전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기존 설비 활용 시 가맹본부에서 상기 표와 다른 별도 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선정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설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영업지역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입문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성년을 원칙으로 함(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면허 소지자
-----	--	--

※ 공정한 사업거래를 위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8항)를 예방의 목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가맹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사로 등록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일 사업 구역 내 다른 가맹점에서 가맹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사로 영업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영업활동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단, 이전 소속 가맹점의 동의를 구하거나 해고 또는 개인의 사유로 동일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맹점사업자)	-	-	-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가맹본부	일부 분담	익월 말일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이 모집광고 요청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익월 말일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운행표준습득 교육비 -보수교육, 특별교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지정)	실비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보수교육 *특별교육 (기사 1인당)

통합솔루션 이용료(앱 플랫폼)	가맹본부	운송수익금 합계의 3.08%	매 익월 15일	-	-	후불, 호출 서비스 수수료
영업지원/대행 서비스 이용료	가맹본부	협의	매월 25일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 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가맹 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 동 등에 대한 지원”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통합솔루션에 대한 지급 기한은 당월 집계 완료된 운송수익금에 대해 매 익월 15일로 납부함을 의미합니다.

※ “운송수익금”이란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택시운송서비스(호출을 통한 영업에 한정하지 아니함)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 합계(부가세 포함)를 의미합니다. 단, 통행료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제 1항의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사항 없음(직전사업년도 차액 가맹금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공급품의 운영	공급품 상태확인 및 비품 운영상태 조사 실시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팀
운영정책 관련점검	별첨 3. 참조	수시	문의: 가맹사업팀
서비스품질관리	별첨 4. 참조	수시	문의: 가맹사업팀
회계처리	가맹금 미지급 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및 페널티	매월 1회 / 별도안내	문의: 가맹사업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차량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

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가맹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헤이웨이 (Hey'Way)”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 해당 사항 없음(필수품목 공급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음.

-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헤이웨이(HeyWay) 프리미엄 택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미지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별도 관리된 차량 및 교육받은 기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중형 브랜드 택시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할 지자체(행정관청) 협의회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가맹본부에 의해 제시된 상품/서비스 가격 별도 통보	홈페이지(SNS, 앱), 메신저, 유선, 이메일, 팩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할 지자체(행정관청)협약에 의해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여객운송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희망자가 허가 받은 영업지역에서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지역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갱신 시에도 영업지역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에 의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행정관청에 의해 조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에 의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이 행정관청에 의해 조정될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완료	서면 통지 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해당 사항 없음(직영점, 가맹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해당 사항 없음(직영점, 가맹점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9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동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수준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물품 등의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또는 2개월) 이상 정기납입경비등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7) 가맹계약의 의무 조항 또는 특약 조항 위반 시	가맹계약서 제 28조 제1항
8) 가맹본부가 본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플랫폼(서비스운영 프로그램)이 플랫폼 제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 된다.	가맹계약서 제 29조 제1항 단서

※ 지급해야할 금액이 2회(또는 2개월) 이상 미납 시 가맹본부는 통합솔루션(가맹 플랫폼 이용 등)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미납금액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될 부가서비스(호출 수수료 등) 금액에서 상계처리 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가맹계약서 제 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한다.	가맹계약서 제32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
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수·양도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본
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
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고
가맹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본부 승인→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본부 승인→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본부 승인→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동일 영업지역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택시 운송 서비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자율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종업원 및 택시운전면허 교대자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현장점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장 또는 차량방문→청결도/차량설비 확인→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미스터리 쇼퍼	담당자가 차량 압행승차→매뉴얼 준수체크→평가표 작성→완료	수시	가맹사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이미지광고,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분담 없음	전국광고	
	가맹점모집+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운수종사자 모집광고	광고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 분담 협의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행사종료 후 분담금 확정→확정 후 익월말 분담금 납입		
판촉행사	할인행사	100%	-	분담 없음		
	증정행사	100%	-			
	팸플렛 등 제작	100%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상이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행사종료 후 분담금 확정→확정 후 익월말 분담금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납입	
		할인금액의 80%	할인금액의 20%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월 할 인금액 제시→제휴서비스 중 료 익월 말 분담금 납입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과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설비 및 집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원 받은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의 장착이 완료된 날부터 해당 차량의 가맹본부 영업표지를 사용한 최초 운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가맹계약서 제 19조 제 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지원 받은 내역에 상응하는 총 금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본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플랫폼(서비스운영 프로그램)이 플랫폼 제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맹계약서 제 29조 제1항 단서)에는 서로 간에 민형사상 책임 없이(위약금없음) 종료됩니다.

※가맹 계약 체결 후 본인 사유(가맹점사업자의 사정)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20만원의 위약금 발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면제합니다.

1. 차량 매매로 인한 업무 중단:

계약 종료 사유가 차량 매매로 확인되며, 본인이 더 이상 택시기사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이를 증빙하기 위해 차량 매매 계약서 및 업무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 소유권 이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강상 문제로 인한 업무 중단:

본인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공식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택시기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택시1대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20일 내외	13p~14p 참조
가맹 희망자 문의	- 전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	
상담	- 사업내용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 전 제공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제공받은 후 14일 후 체결(1일)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 증권 교부 및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단, 은행 예치 제도 이용 시 당사 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7(1일)	
교육 실시	- 입문 교육 실시	1일	
기자재,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설치	1일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 부 부담 비용비 율	지급절차	비용부 담 제외사 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 제외 사유 해당 시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다만, 무점포(점포 시설 공사가 필요 없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인센티브	매월 선정된 자에게 소정의 금액 또는 상품을 제공	최근 30일, 마스터크루 유지자	매 월	- 우수 크루 알림 - 최우수자 중 상위 1%~10%인 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 교육	서비스필수교육, 고객응대 역량강화 등	온라인	운행개시 1일 전	개점 전 실시
보수 교육	운행 서비스 향상 교육	이론	필요시	개점 후 실시
특별 교육	품질 정책 및 브랜드택시 매뉴얼 미준수에 따른 교육	이론	필요시	개점 후 실시

*위 표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서비스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헤이웨이 (Hey'Way)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입문 교육	1일 / 2~4시간	77,000원	최초 가맹 시 필수 이수 (신규기사 1인당)
보수 교육	2~8시간	실비	필요 시
특별 교육	2~8시간	실비	필요 시

*위 표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서비스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택시에서 전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상기 표와 다른 별도 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품질정책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계약을 맺은 당사자 소속의 지정된 운송종사자가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며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5. 보수교육

품질정책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계약을 맺은 당사자 소속의 지정된 운송종사자가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70-4266-272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구입강제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비정상적인 운행에 따른 운영 정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서비스품질 등급 관리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영업표지 운영안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서식)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헤이웨이		
	성명(대표자) 한영철		
	주소(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A동 1301호	전화번호 070-4157-8922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지 서식]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디에이치모빌리티 (DH MOBILITY)
브랜드명	헤이웨이 (HEY'WAY)

가맹희망자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3. 전화번호			
4.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5. 제공받은 장소			
	※구체적으로 작성(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6. 수령확인 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령하였음]		
	※“수령하였음”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주의사항: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6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디에이치모빌리티 (DH MOBILITY)
브랜드명	헤이웨이 (HEY'WAY)

가맹희망자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3. 전화번호			
4.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5. 제공받은 장소			
	※구체적으로 작성(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6. 수령확인 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령하였음]		
	※“수령하였음”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주의사항: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6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